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제20조의 2)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나.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다.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7조 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 표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품질인증

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대상)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의 유용성, 접근성 및 적시성
4. 데이터 생산·수집의 적법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
4. 데이터 생산·수집의 절차 및 과정
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5(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와 조직을 보유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갖출 것
5.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구체적인 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데이터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20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제28조제2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0조제1항·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

제37조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5제4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00	700	1,000

[신설]

현행	개정안
	<u>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등) 과</u>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u> <u>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향</u> <u>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u> <u>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u> <u>의 개발</u> <u>2.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u> <u>설팅</u> <u>3. 데이터 품질 표준의 개발 및</u> <u>배포</u> <u>4.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지원</u> <u>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향상을</u> <u>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 신청</u> <u>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데</u> <u>이터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u> <u>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데</u>

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대상)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의 유용성, 접근성 및 적시성

4. 데이터 생산·수집의 적법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

4. 데이터 생산·수집의 절차 및 과정

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5(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와 조직을 보유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구체

적인 데이터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갖출 것

5.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구체적인 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

	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을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20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신설] 6 ~ 12 (생 략) ③ (생 략)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 2 (생 략) [신설] 3 (생 략) [신설]	② ----- ----- -----. 1~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0조제1항·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 6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청문)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의5제4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신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지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해당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 없이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00	7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6297